

사회적경제 들여다보기 보고서 시리즈 I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및 지원현황

2016.7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
양성옥 책임간사 piyrwaz@cubs.or.kr

1 조사배경

- ‘사회적경제’는 국제적인 공통의 정의가 없는 모호한 용어¹⁾이며,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으로 분류됨.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우리가 사회적 경제 개념을 차용해 온 서구에서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조세감면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 또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립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임. 반면,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의 인건비 뿐만 아니라 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물품 우선/의무 구매 조항을 만들어 설립부터 운영까지 직접지원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해 양적팽창만 이뤘을 뿐 정부의 지원 없이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은 사실상 전무함.
-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려 함 본 보고서는 그 첫 번째로써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현황 및 물품우선(의무)구매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비교·분석하였음.

2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현황

- 지난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공포된 이후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해왔음. 심지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

1)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육성지원 관련 조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음. 복지를 포함한 사회적 영역과 경제의 영역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개념이며, 국내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구체적인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임. 사회적경제는 주로 유럽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며 미국에서는 제3섹터라는 용어를 사용함.

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1. 광역 시·도 지자체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현황

-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상위법 근거로 하여,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 중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총 8곳임.

[표1]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지자체 조례현황

	지자체	제정일자	조례명
1	서울시	2009.5.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5.7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적경제기업 재화 및 서비스 100분의 5이내 의무구매 규정
2	경기도	2014.1.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5.10.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사회적경제기업 재화 및 서비스 100분의 5이내 의무구매 규정
3	울산시	2010.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4	대구시	2011.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강원도	2012.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자치법규)
6	대전시	2012.6.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7	충청북도	2009.5.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8	경상북도	2009.3.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5 이내”로 정해 사실상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권고하는 정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2. 광역 시·도 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현황

- 17개 광역 시·도 교육청의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경기도를 포함한 10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을 알 수 있음.

[표2]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청 조례현황

	교육청	제정일자	조례명
1	서울시	2014.12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	광주시	2012.5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3	부산시	2015.11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4	인천시	2014.5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5	세종시	201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6	경기도	2013.11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7	경상북도	2015.10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8	전라북도	2015.5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9	충청남도	2014.3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10	제주도	201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관련 조례가 사회적기업의 물품 우선구매를 권고하는 수준이었던 반면, 교육청 관련 조례는 서울, 세종,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교육청(6곳)이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조례를 제정한 곳 중 위 6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교육청의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권고하는 수준의 조례를 제정하였음.
-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구매목표율과 그에 따른 예산까지 사전에 정하고,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계획대비 구매실적 등을 포함한 실적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3 사회적기업 물품 의무구매 현황

1. 광역 시·도 지자체 사회적기업 물품 의무구매 현황

-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물품구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 중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3] 지자체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현황

(단위:천원)

	경상북도	충청북도	울산시	경기도	대전시	강원도	대구시	서울시
2009	1,100	50,874						
2010	104,000	201,581	135,229					
2011	415,000	227,908	392,662					
2012	102,000	398,893	144,130					
2013	739,000	652,643	263,043		2,631,428	120,000		
2014	106,000	1,499,558	358,440	636,105	2,644,691	112,000	796,000	
2015	405,000	1,217,026	518,346	564,990	1,348,161	936,000	1,732,033	7,937,801

-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2015년 기준 평균 10억원 정도의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의 경우 2015년 구매금액이 79억원에 달해 우선구매 조례가 제정된 타 지자체에 비해 사회적기업과의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2015년도 물품구매순위 TOP10은 아래와 같음.

[표4] 특정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순위 top10

(단위:천원)

순위	지자체	거래업체	구매횟수	거래금액	거래내용
1	서울시	(주)구츠	15	1,962,467	기타물품
2	서울시	(주)레드스톤시스템	3	614,200	기타물품
3	충청북도	숲에인주식회사	8	611,540	사방댐
4	서울시	(주)착한사람들	1659	518,024	기타물품
5	서울시	리드릭	1105	479,875	
6	서울시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2	403,594	기타물품
7	강원도	두레ilter	2	397,876	씨감자 골판지 상자 및 포장부자재
8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사업단 정립전자	11	397,363	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기타물품
9	서울시	티팻(주)	4	324,682	기타물품
10	서울시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14	234,003	기타물품

- 특정 사회적기업과의 거래 TOP 10을 도출한 결과 서울시가 거래한 8개의 사회적기업이 10위권 안에 속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수기업체로 등록된 (주)구츠²⁾ 사회적기업과의 거래금액은 20여억원에 달해 서울시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총액인 80여억 중 25%를 (주)구츠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특정업체와 평균적으로 1억원 미만의 영세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광역 시·도 교육청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현황

- 광역 시·도 교육청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도교육청이 140억원 가량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교육청이 90억원 가량으로 2번째로 많았으며, 경기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이 70억원 가량으로 뒤를 이음. 특히 대부분의 교육청이 최근 1-2년 사이 구매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표5] 교육청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현황

(단위:천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시	5,684,000	5,968,000	3,225,280	3,496,856	8,951,554	8,972,867
광주시			623,852	886,329	2,070,391	1,654,895
대구시	118,553	395,351	451,929	1,405,331	1,109,323	1,071,040
부산시						3,453,755
울산시				229,359	80,954	956,170
인천시					6,716,821	5,070,447
세종시			39,121	59,082	89,988	533,368
경기도				904,432	5,946,979	7,671,200
경상남도			442,984	463,105	738,498	2,249,556
전라남도	277,856	349,82	580,439	621,014	745,008	821,233
전라북도	856,000	1,204,074	2,714,000	4,639,860	7,970,610	14,148,885
충청남도					4,156,375	7,386,285
충청북도				621,703	333,915	1,428,828
제주도						2,101,918

2) (주)구츠의 기업정보는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company-info-view/idx/27127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17개 광역 시·도/교육청의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의무구매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를 촉진 또는 강제하는 조례제정이 최근 2-3년 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지자체 및 교육청의 사회적기업물품구매 금액도 급증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인건비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쏟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물품구매금액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전체지원금액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됨.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은 대부분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이는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간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음. 각종 세금 및 물품구매 지원 등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돕는다면 이들 조직들의 자생력은 상실할 수밖에 없고, 또한 품질로서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기업보다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려는 조직이 확산되어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게 됨.
- 자립과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운영되는 건강한 기업의 양적/질적 확산을 위해 현재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직접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원점에서 재고 될 필요가 있음.